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9.

발 의 자 : 박지혜·이주희·윤준병
김상욱·박 정·박지원
전진숙·강준현·문금주
이용선·박정현·김준혁
의원 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발행·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(안 제 72조제1항제5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94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른 녹색채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2조(한국은행에 관한 특례)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(이하 이 조에서 “국채등”이라 한다)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국채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국채등의 등록(「국채법」, 「국고금 관리법」 또는 「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」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)을 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(생략)	제72조(한국은행에 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른 녹색채권 ② (현행과 같음)